

日帝 齋藤總督의 「文化政治」의 欺瞞性

金雲泰
(教授)

1920年代의 日本은 國內의으로는 軍部, 官僚 및 財閥과의 提携을 強化하고 大陸侵略을 위한 軍備擴張과 獨占的 金融資本의 增殖에 沒頭하는 同時に 國際의으로는 植民地 韓國에 對한 支配政策을 深化하고 나아가서는 大陸 滿州侵略의 積極政策을 追求하기 시작했다. 특히 韓國民族의 三·一獨立運動에 威脅을 느낀 日帝는 종래의 「武斷政治」로 부터 虛偽의인 「文化政治」를 표방하고 懷柔와 摧取를 보다 强化시켜 간 것이다.

1920年代의 日帝의 對韓植民政策은 종래의 憲兵警察에 依한 軍事專制體制의 「武斷政治」로서는 도저히 交配를 계속 할 수 없었고 또當時 日帝가 直面한 國內外의 矛盾對立을 回避하기 위해서도 韓民族에 對한 政治的 支配 특히 民族上層부의 懷柔와 民族分裂統治를 强化하고 아울러 經濟的 收奪을 强行하면서 「문화의 發達과 民力의 充實」이란 一種의 植民統治의 妥協形態로서 所謂 欺瞞의인 「文化政治」를 그 基本으로 내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本來 「文化政治」는 결코 本質의in 政治改革이나 또는 對韓植民政策의 基本方針의 根本의in 變革도 아니며 다만 同化政策을 深化하고 民族의 上層階級의 一部를 買收하고 韓國統治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간의 出版物, 結社를 許可하고 威嚇政治를 象徵하는 制服帶劍을 廢止, 改正하는 등 보다 狹猾한 分裂懷柔支配政策을 僞裝한 것에 不過했다.

다음에 提示하는 諸「官制改革」, 原敬의 「統治私見」 및 總督의 施政方針訓示 기타 總督部機構의 一部改正은 이러한 目的에서 試圖된 것이었다. 當時 日本의 首相 原敬은 歐美諸國의 植民地制度를 參酌하여 탄들어진 「台灣制度」를 模倣한 韓國의 現行 植民地制度는 根本적으로 賈遁이라 하고 「日本과 韓國과는 言語, 風俗, 人種, 歷史가 거의 同一하므로 韓國이나 內地는 全然 同一한 制度를 펴도 좋다고 믿는다. 즉 行政上, 司法上, 軍事上 기타 經濟, 財政의 點에서도 教育, 指導의 點에서도 全然 同一해야 할 것이다… 결국 韓國을 內地에 同化하는 工針을 가지고 諸般 制度를 破壊하는 것은 가장 오늘날에 適切한 處置이며 또

併合의 目的도 이로서 비로써 達成할 수가 있다고 믿는다」⁽¹⁾고 하여 民族抹殺과 同化政策의 推進을 暗示한 바 있으나 이것이 바로 이른바 「文化政治」의 本質이었다.

또한 1919年 9月 斎藤實이 朝鮮總督으로 赴任하였다. 海軍大將 斎藤實은 敏感하고 同情心이 있고 日本 軍閥中에는 頭腦있는 將軍에 屬하였다. 그가 朝鮮總督으로 任命되자 前述한 丘敬의 意見을 反映시킨 그의 「施政方針訓示」에는 다음과 같이 「文化政治」의 欺瞞性을 드러내고 있다. 즉 「官制改革의 趣旨는 今上陛下의 優詔에 지시된 바와 같이 日韓併合의 本旨에 『각하여 一視同仁 各其의 所를 得하여… 總督은 文武官의 어느쪽에서도 任用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다시 憲兵에 依한 警察制度를 보통 警察官에 依한 警察制度로 代置하고 다시 服制의 改正을 하여 一般官吏 教員 等의 制服帶劍을 廢止하고 朝鮮人의 任用待遇등에 考慮를 加하고자 한다. 要컨대 文化的 發達과 民力의 充實에 따라 政治上 社會上의 待遇에 있어서도 内埠人과 同一한 取扱을 할 窮極의 目的을 達成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²⁾ 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이와같이 官制의 規定上으로는 總督에 武官 뿐만아니라 文官도 任用할 수 있게 하였으나 結局은 그후의 朝鮮總督도 全部 軍人 뿐이었다. 元來 이러한 規定에 關해서는 처음부터 反對者가 陸軍을 中心으로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總督府가 編纂한 「施政 25年史」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우선 本府官制를 改正하여 從來 總督의 任用은 武官에 限했던 것을 改正하여 全然 그 制限을 撤去하고 또 在來의 憲兵警察制度를 廢止하여 普通 警察制更로 하고 官吏, 教員등의 制服帶劍을 廢止하고 (大正八年(1919年) 八月 勅令 第403號)總督政治의 基本을 純全한 文治政治로 한다는 方針을 明白히 하고 크게 文化的 開發에 힘을 기울이기 爲하여 普通 文化政治라고 일컬어치지만 半島統治의 根本 方針에 있어서는 초금도 相異한 바가 없다… 그 施政上의 緬領은 (一) 治安의 維持, (二) 民意의 譭達, (三) 行政의 刷新, (四) 國民生活의 安定, (五) 文化 및 福利의 增進」等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基本的인 여러 緘領을 完遂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重要한 計劃이 세워졌다.

- (1) 軍人에 限定되었던 總督地位의 文官에의 開放
- (2) 日本人과 韓國人間의 差別待遇의 撤廢
- (3) 去令의 簡素化
- (4) 事務處理의 迅速化
- (5) 地方分任主義
- (6) 地方制度의 改定
- (7) 在來文化 및 慣習의 尊重
- (8) 言論, 集會 및 出版의 自由

(1) 「朝鮮統治私見」斎藤實傳 第二卷 p.426.

(2) 「施政에 關한 謩告, 訓示並演述」大正 8-11年 p. 2.

- (9) 教育의 普及과 產業의 開發
- (10) 警察機制의 整備
- (11) 醫療 及 衛生施設의 擴張
- (12) 民心의 綏撫善導
- (13) 人材登用의 門戶開放
- (14) 日本人·韓國人간의 融和

이들 諸改革案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1) 警察制度의 革新, (2) 教育의 普及 改善, (3) 產業의 開發, (4) 交通, 衛生의 整備, (5) 地方制度의 改革, (6) 司法上의 改革 等 이었다. 이로써 「一視同仁의 聖意」를 받들어 公明正大한 政治를 行하고 善良한 民衆을 愛護하는 同時に 단약 國憲에 反抗하여 併合의 精神에 乖離되는 것 같은 不逞輩에 對해서는 조금도 가차없이 이를 取締하는 方針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다.⁽³⁾

이로써 明白하게 진 바와 같이 「文化政治」라 하지만 그 「根本方針」즉 韓國에 對한支配의 本質은 「조금도 强이한 바가 없다」는 것이며 警察制度 等 諸制度의 改正을 通하여 譚壓과 懷柔에 依한支配와 收奪의 強化가 計劃된 것이었다.

當時의 韓國支配者가 쓴 한 統治秘話에는 韓國統治方針으로써⁽⁴⁾

- ① 韓國의 獨立을 許容하지 않을 것
- ② 韓國의 自治를 許容하지 않을 것
- ③ 韓國의 地方自治를 認定할 것
- ④ 在外韓國人에 對한 保護取締의 方針을 세울 것
- ⑤ 文明的 政治를 實施할 것

等을 열거하고 있으나 ① ② ④는 바로 그대로이고 ③ ⑤는 일웅 表面上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나 實質에 있어 다음에 論述하는 바와 같이 「地方自治」도 「文明的 政治」도 韓國人民의 幸福과는 하등 聰聯이 없는 欺瞞的인 것이었다.

무릇 「文化政治」의 本質은 日帝의支配者가 三·一運動으로 打擊을 받고 다시 계속되는 民族獨立運動·는 譚壓하기 위한 政策이었으며 그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로 警察制度를 從來의 憲兵警察로 부터 普通警察로 改正하였으나 憲兵은 從來의 警察任務를 떠나서 軍事에 專念할 수 있었고 또 警察·軍隊는 增強되는 民族運動에 對處하여 보다 그支配·는 強化하기 위한 手段이었다.

둘째로, 약 100의 韓國人을 總督府 官吏에 登用하고 또 韓國人의 不平不滿을 懷柔하는 政策에 依하여 支配機構의 擴大強化를 도모하였다.

셋째로 學校施設을 擴充하여 「皇民化」教育을 強化하고 民族獨立思想의 譚壓과 民族의 歷

(3)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昭和 10年, pp. 314-315.

(4) 「朝鮮統治秘話」, pp. 156-161.

史와 文化的 抹殺 및 歪曲을 보다 積極的으로 感慨하였다.

넷째로, 產業開發의 名目下에 「產米增產計劃」을 세워 韓國米를 收奪하는 同時에 水利組合, 金融組合, 그리고 東拓 等을 通하여 農民을 收奪하였다.

다섯째로, 日本人 農業移民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反面, 韓國農民은 滿洲 等國外로 追放하였다.

여섯째로, 日帝 植民治下에서 教育, 新聞, 言論, 工業化, 交通通信 및 都市化 等의 부분적인 發展이 그들의 利益이 되는 範圍內에서 强要되었다.

一. 軍備警察의 強化

앞서 引用한 「施政 25年史」에 記述된 바와 같이 施政上의 縱領의 第一은 「治安維持」이었다. 民衆獨立運動의 危脅을 느낀 그들은 교묘하게 武力鎮壓과 支配를 強化하면서 「治安」을 維持한 것이다.

우선 警察에 關하여 「憲兵으로 하여금 그 本來의 任務인 軍事警察을 담당케하고 地方警察은 ○ 를 普通警官에 委任하는 것은 現況上 適當한 改變이라고 믿는다. … 將來 警務員에 大大的 增加를 단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安心하고 그 任務에 從事케 하며 또한 搜查檢舉를 容易하게 하는 것이 必要하다」⁽⁵⁾고 하였다.

軍備에 關해서 朝鮮陸軍參謀部는 「將來 永久히 主要한 地點에 다 兵力を 分置하고 全道에 걸쳐 分散配置를 取할 必要가 있으며… 現在의 二個師團을 가지고는 現在의 實況이 證明하는 바도. 같이… 겨우 一時의in 應急의 희망을 充足할 수 있는데 不過하며… 새로운 獨立守備隊를 新設하는 것이 必要하다」⁽⁶⁾고 하였으며 兵力增强에 關해서 原敬 首相은 「朝鮮軍司令官 宇者宮 中將이 一時 歸京하여 來訪했을때 談話한 要領은 韓國人의 獨立思想은 根底가 깊어 이를 輕視함은 不可하며 朝鮮駐屯軍은 過少하므로 內地의 比率에 비추어 增兵할 必要가 있다」⁽⁷⁾고 記述하고 있으며 朝鮮總督 斎藤은 「朝鮮에 陸軍兵力增强을 要한 件」을 提出하여 韓國內에 苦干 師團」(2個師團)을 內地로 부터 移轉할 것」을 提議한 바 있다.⁽⁸⁾

韓國에 있어서 警察官署數와 警察官數는 三·一運動 前에 비하여 각기 3.6倍와 3.2倍로 增

(5) 朝鮮陸軍參謀部가 三·一運動鎮壓의 經驗에서 마련한 「騷擾의 原因及 朝鮮統治에 注意해야 할 件 및 軍備에 關하여」(1919年7月14日)라는 統治方針參考, 「現代史資料」朝鮮(二), pp. 647, 649.

(6) 現代史資料, 前揭書, p. 653.

(7) 「原敬日記」, 8, p. 331.

(8) 斎藤의 「文化政治」도 그 本質은 武斷政治이었음은 그가 中央政府에 提出한 韓國內에 2個師團을增强하라는 意見書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거기서 그는 3·1運動이 그와 같이 擴大된 것은 韓國駐留의 軍隊가 2個師團에 不過하니 그것도 그것이 龍山과 羅南에 集中하여 있었기 때문임으로 이 軍隊配置를 韓國全土에 分散配置할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現在의 2個師團은 兵力이不足함으로 다시 2個師團을 더 增發하되 이는 日本內地로부터 移駐시키는 것이 國際問題도 慮起하지 않는다는 意見을 陳述하고 있다.

大하였다. 總督府는 約 1萬名의 警官을 補充하기 爲하여 우선 日本으로 부터 約 3千名을 모집하고 憲兵 中에서 警官으로 轉用하고 또 巡查補를 巡查로써 채용했고 一府郡 一警察署, 一面 一駐在所主義를 擇했다.

이리하여 警察補 以下 巡查가 大幅 增員되어 警察의 派出所, 駐在所가 擴充되고 特히 特高刑事에 依한 韓國人 監視가 強化되었다. 警察幹部, 特高刑查, 私服巡查, 制服巡查, 密偵 및 이밖에 憲兵尉官, 憲兵下士官의 數가 增加되었고 특히 憲兵上等兵의 數는 三·一運動 前에는 없던 것인 650名으로 增加하였으며 憲兵遣派出所도 增加되었다. 이들은 獨立運動家와 愛國者에 對한 여 항시 尾行, 查察臨檢, 不審尋問,豫備檢束을 實施할 뿐더러 韓國人 生活의 모든 面에 깊이 關與하여 그 行動과 思想을 探知하고 統制하였다. 實事上 總督府豫算中에서 最高를 占하는 것은 殖產費도 아니고 教育費도 아닌 바로 警務費였다. 그를 위하여 年一千數百萬圓의 經費가 必要했으며 特히 그 中 數十萬圓은 機密費로써 韓國內外 到處에 潛伏해 있는 無數한 密偵들을 爲해 使用되었다. 따라서 韓國人은 相互 同志間사이에, 同胞들 사이에 조차 솔직하게 談話도 할 수 없는 狀況이었다.⁽⁹⁾

한편 日帝는 警察機能을 높히기 爲하여 警官에게 韓國語를 習得케 하였으며 이로써 韓國人の 動靜을 보다 깊이 탐지케 하고 犯罪人の 檢舉에 效率을 올리도록 했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警備施設의 充實, 警察力의 集團화, 機動力의 強化를 도모했으며 警備電話가 擴充되고 指紋制度, 寫真手配制度 等을 採擇하였다. 이리하여 「文化政治體制下」에서 점차 武斷軍警以上의 威力を ��와 같은 新警察力이 發揮하기에 이른 것이며, 全國에 걸쳐 強化된 警備體制로 巧妙한 彙整政策을 慈行한 것이다

二. 親日分子의 育成과 懷柔政策

韓日合併後 日帝는 合併에 功勞가 있었던 賣國的 親日分子를 日帝의 貴族으로 編入시켜 懷柔해 왔으나 三·一運動이 勃發하자 그들의 待遇를 改善할 必要에서 貴族院議員으로 任命하여 政治의 一部에 干與케 하는 동시에 親日 韓國人有力者를 利用 및 保護하는데 汲汲하였다.

특히 三·一運動 以後 斎藤總督은 全國의으로 警備體制를 強化하는 동시에 巧妙한 彙壓政策과 買收政策을 慈行하였다.

買收政策은 斎藤實의 舊友인 阪谷芳郎도 「獨立宣言署名者 33名같은 人士를 呼出하여 그들의 意見을 聽取해서 改革을 實施한다면 同一한 일을 하더라도 크게 鮮人은 滿足하고 自然

(9) 警察費: 1918年에 800萬圓에서 1920년에 2,394萬圓으로 約 3倍 增加했으며 警察官署數는 1919年 3·1運動前에 736個에서 1920년에 2,746個 그리고 警察官數는 同期間에 6,387人에서 20,134人으로 增加하였다.

朝鮮人心을 보다歸服시킬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의 齋藤에게 보낸 書信에서 말하고 있었다. 한편 齋藤實도 阪谷芳郎에게 보낸 公文書(1919年 9月16日)에서 「親日鮮人の 優遇」로서 「騷擾以來 特히 我國을 위하여 努力한 者에 對해서는 官位利祿으로써 크게 優遇의 實을 表示할 必要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事實上 33名의 獨立運動署名者는 崔南善氏를 위시하여 大量은 者가 買收되어 버린 것이다.

이리하여 齋藤은 「親日分子」育成의 構想으로서 「朝鮮民族運動에 對한 對策」(1920年)을樹立하였다. 즉 「아마 將來의 運動은 昨春 있었던 萬歲騷擾와 같은 어린이 장난같은 것이 아니고 根底있고 實力있는 組織的 運動이 될 것은 오늘에 있어 미리 이를 覺悟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長地에서 「親日派」와 「排日派」를 區分하고 前者에 對해서는 事情이 許容하는 限便宜와 援助를 提供하고 後者에 對해서는 彈壓할 것을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은 6項目의 對策을 세운바 있다.⁽¹¹⁾

- (1) 親日分子를 貴族, 兩班, 儒生, 富豪, 實業家, 教育家, 宗教家등 속에 浸透시켜 各種의 親日團體를 組織할 것.
- (2) 宗教的 社會運動을 利用하기 위하여 寺刹令을 改正하여 佛教各宗派의 總本山을 「京城」에 두고 그 管長乃至 援助機關의 會長에 親日分子를 配置하는 동시에 基督敎에 대해서도相當한 便宜와 援助를 提供할 것.
- (3) 親日의 民間有志者에게 便宜와 援助를 提供하여 秀才敎育의 名義下에 朝鮮青年을 親日分子의 人材로 養成할 것.
- (4) 親日의 民間有志者中에서相當한 學識을 가지면서 「遊食者」가 된 者를 救濟할 것.
- (5) 朝鮮人 富豪, 資本家에 대하여 「日鮮資本家의 連繫」를 推進할 것.
- (6) 「民間의 有志」에 便宜와 援助를 提供하여 「日鮮融和」의 「修齊會」를 組織케 하고 이에 國有林의 一部를 拂下하고 入會權을 주어 農村指導에 힘쓰게 할 것.

이와 같은 民族分裂과 買收政策에 의하여 많은 親日地主와 資本家등이 結託하여 親日團體를 組織하였으며 日帝는 이를 親日團體를 통하여 韓國人에게 民族改良主義思想을 浸透시켜 日帝에妥協및 協力케 하였으며 或은 韓國獨立運動의 「時期尚早論」을 主張케 하고 또는 政治運動 대신에 文化運動, 「自治運動」, 「物資獎勵運動」, 「生活改善運動」등을 展開케 한 것이다.

總督府는 또 이밖에 「民心」을 收拾하고자 民情을 視察하는 事務官을 地方에 派遣해서 穩健한 思想의 宣傳에 努力케 하고 民意를 暢達케 하는 데도 留意했으며 朝鮮笞刑令을 廢止하는가하면 (1920年3月) 또한 儒生을 懷柔하기 위하여 鄉校를 補助하고 御用機關인 中樞院을 改編하여 3年任期로 定하는 동시에 大地主등 地方名士와 有力者를 起用하여 그 範圍를 넓히

(10) 齋藤實의 阪谷芳郎宛書翰, 『萬歲騷擾事件』2, p.7.

(11)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上, 青木書店. 1973. p.218.

고 手當을 增^貢시키는 등 그 御用度를 強化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所謂 「一視同仁」「無差別」이란 名分下에 韓國人の 人材登用에 있어 特別任用의 範圍를 擴張하였고 또 「內鮮人官吏의 待遇가 全的으로 同一해졌다」고 하세를 부리기 조차 하였으니⁽¹²⁾ 이렇듯 韓國人에 대한 懷柔에 一層 汲汲하였지만 實際로 總督府官僚 276名增員(431名^을 707名으로)에 韩國人은 不過 10餘名을 그리고 地方道廳官吏 1,598名增員(481名을 2,019名으로)에 韩國人은 約 100名前後를, 또 府郡官吏도 656名增員(2,258名을 2,814名으로)^이 韩國人은 199名을, 結局 총 299名을增員한데 不過하여 그 結果도 基本給에 있어서는 同一하게 改正하였다. 하지만 手當등 其他收入에 있어서 엄청난 隔差가 殘存하였던 것이다.

이밖에도 日帝는 日本人과의 結婚을 嘉勵하였다. 이와 같은 日帝의 買收, 懷柔政策과 親日分子의 育성이 무엇을 意圖한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날음이 있으며 다만 그들의 이러한 懷柔政策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再論할 餘地가 없었던 것이다.

三. 民族同化教育

日帝는 韩國人の 政治的 社會化를 위하여 韩國의 教育文化에 대하여 格別한 注意를 傾注하고 韓日合併을 强行한 以來로 植民初期에는 短年限의 實用主義教育으로 良心的 人間의 機能이 瘦瘠된 機械人을 만드는데 着眼하여 韩國人教育에 對한 差別政策을恣行해 오다가 마침 三·一運動에 있어서 數많은 韩國人學生이 參加하여 指導的役割을遂行함으로서 威脅을 느낀 日本當局은 所謂 「一視同仁」 또는 「內地延長主義」의 名義下에 「民族同化」政策을 強力히 推進한 것이다.

本來 日帝가 保護條約을 强行하자 排日 民族主義가 民間教育運動의 形態로 組織화되었으며 특히 韓日合併 以後에는 基督教私立校를 包含한 私立學校教育에 대하여 徹底한 思想監視를 隱으로나 陽으로 하여 왔던 것이다.

이들 私立學校와 書堂을 비롯해서 普通學校로 부터 專門學校에 이르는 官公立學校의 韩國人學生은 「바우자」「알자」하는 向學熱을 民族的 當爲로서 불태우면서 民族意識을 培養해 오던차에 三·一運動에 主導的役割을遂行한 것이다. 여기서 威脅을 느낀 日本政府는 1919年 4月에 재빨리 朝鮮教育에 대하여 「教育은 彼我同一의 方針을 取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여 「內地延長」의 準據主義 教育政策 또는 「同化主義」를 主張하였다.

이와 같은 植民政策의 轉換方針下에 朝鮮總督 斎藤은 赴任直後 將來에 있어서 朝鮮產業及官吏任用과 地方制度에 있어 事情이 許用하는 限 漸次 「內地」와 差異가 없는 境地에 達하도록

(12) 施政二十二年史, 朝鮮總督府, p.322.

특期할 뜻이며 「…要컨대는 内地朝鮮 共히 帝國領土內로서 何等差異가 있을 根本의 理由가 없음으로 漸次内地와 같도록 하는 것이 곧 朝鮮에 대한 終局의 目的이다」⁽¹³⁾라고 訓示를 發表하였다. 齋藤總督이 訓示 諭告를 發한 中에서도 「文化的制度」의 改革 및 「文明政治」의 基礎로서 警察制度의 根本的改革, 地方自治制度의 改革과 더불어 朝鮮人教育의 大改革을 들고 있는 것。注目된다. 齋藤總督은 韓國人을 日本人과 同等으로 处理하여 韓國人의 感化되기를 바랐었고 同時に 教育의 形式을 日本教育과 같게 하여 制度上이나마 韩國人과日本人이 서로 學校를 넘나들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이리한 同等이란 形式에 따라 學生의 思想도 日本人과 同等으로 社會化시켜 日本國民이 되는데 日本人과 差異가 없게 만들려고 誘導 感化시키려는 政略이 內包되었었다. 그리하여 全體 學制改革의 基本方針이 日本 準據主義에서 出發하였으나 人心의 動搖를 避하기 위해서 教育制度는 全面적으로 改正하기에 앞서 우선 一部를 改正하여 民衆에게 새 認識을 주려고 한 것이며 우선 行政上 學務局의 陣容을 再編強化(編修官, 観學增員)한 후 1919年12月 高等普通學校規則 及 女子高等普通學校規則을 改正하였으나 (1) 日本語로 自由로이 意思를 發表할 能力を 기르고 文學上의 趣味를 養成한다. (2) 朝鮮語는 普通의 言語外 文章을 理解토록 하며 簡易實用의 朝鮮語作文이 可能하도록 한다. (3) 外國語를 必須科(男子) 隨意科(女子)로 하고 其他 實業科를 尊重하고 普通學科를 綜合化하는 若干의 科目變更을 하도록 했다.⁽¹⁴⁾

1920年 3月에는 私立學校 規則을 改正하여 (1) 私立 各種學校의 教科目 制限을 걸어지우고, (2) 教師의 資格을 緩和시키고, (3) 教育과 宗教의 絶對 分離主義를 變改함으로서 宗敎學校와 宣教師들의 教育事業에多少 便宜를 주어 그들의 歡心을 사려고 力하였다.

1920年11月 朝鮮教育令을 一部改正하여 普通學校 修業年限을 4年에서 原則上 6年을 本體로하고 日本歷史와 日本 地理를 教科目에 加하고 理科, 圖畫, 體操를 必須科目으로 고쳤으며 高等普通學校의 朝鮮語를 必須科目에서 隨意科目으로 하고 다시 高等普通學校에 補習科(2年)를 設置하였다. 그 教科課程에서는 朝鮮語를 削除하였다.⁽¹⁵⁾

總督府는 다시 「臨時教育調查委員會」를 設置하고 1922年 2月에는 新教育을 公布하였다. 이 新教育令은 새로 師範教育 및 大學教育을 設置하는 同時に 普通敎育과 專門敎育의 程度를 넓히고 內鮮共學과 「一視同仁」의 精神에 依據해서 「內地準據主義」를 擇하여 日本과 同一한 教育制度를 採用한 것으로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新敎育令은 韩國人敎育뿐만 아니라 在韓日本人敎育도 改正하여 兩者的 教育의 區別을 一概撤廢하고 韩國人과日本人의 區別을 「國語常用者」「國語非常用者」로 區分하였다.

(13) 大野謙一, 「朝鮮敎育問題管見」, pp. 94-95.

(14) 李萬珪著, 朝鮮敎育史 下, 乙酉文化社, 4282年, p. 251.

(15) 李萬珪, 前揭書, pp. 251-253.

(2) 學校의 種類, 系統, 修學年限을 基의 日本과 同一하게 했고 普通學校를 6年制로 하여 高等科 設置, 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을 5年制로 했다.

(3) 大學教育을 認定하여 大學校 設置, 師範教育(修學年限 6年으로 하고 普通科 5年 演習科1年)을 新設했다.

이와 같이 形式上 日本의 教育制度에 準據해서 改革한 것은 民族的 自覺과 獨立思想을 없애고 日本人化를 위한 教育의 強化를 意圖한 것이다. 이 事實은 다음의 教科課程 및 教科書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示唆하고 있는 바이다. ⁽¹⁶⁾

普通學校 教科課程 及 每週教授數(1922年)

課目 學年	修 身	國 語	朝鮮語	算 術	國 史	地 球	理 科	職 業	唱 歌	合 計
1	-	10	5	5	-	-	-	-	-	21
2	-	10	5	5	-	-	-	-	-	21
3	-	12	3	6	-	-	-	1	3	26
4	1	12	3	6	-	-	2	1	3	28
5	1	9	2	4	2	2	2	2	3	27
6	1	9	2	4	2	2	2	2	3	27
合 計	3	62	20	30	4	4	6	6	12	150

(備考) 主要社目에 限함

上記表에서 보다시피 新教科課程은 (1) 日本語의 時間이大幅增加하고 朝鮮語의 時間이減少되고, (2) 日本의 歷史「國史」地理의 時間이增加하고, (3) 職業教育이 새로 加해지고 있다.

教育內容에 있어例컨데 「國史」教科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 | | | |
|-----|---------------|--------------------|----------------|
| 卷一. | --. 上古의 朝鮮半島. | 二. 三韓. | 三. 文學, 佛教, 工藝. |
| 四. | 日本府 其一 | 五. 日本府 其二 | 六. 百濟, 高句麗의 滅亡 |
| --. | 新羅統一 | 八. 高麗 其一 | 九. 高麗 其二 |
| --. | 高麗 其三 | 十一. 高麗 其四 | |
| 卷二. | --. 朝鮮의 太祖 | 二. 太宗及世宗 | 三. 世祖 |
| 四. | 朝鮮의 文化 | 五. 土禍及朋黨 | 六. 壬辰의 亂 |
| --. | 丙子의 亂 | 八. 英祖及正祖 | 九. 大院君의 執政 |
| --. | 江華島事件과 壬午의 政變 | 十一. 甲申의 政變과 甲午의 革新 | |
| --. | 大韓 | 十三. 紳監府의 設置 | |

(16) 弓削幸太郎著、朝鮮の教育。

(17)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卷一、二：

이 教校는 1920년부터 「朝鮮人을 教育하는 學校에 있어서 文部省尋常小學國史를 教授하는 경우
補充할 朝鮮에 關한 事歷의 大要」로서 編纂된 것이었다.

一四. 日韓併合

十五. 總督政治

그리고 『教材內容의 一例를 들어 보면』

「總督政治」의 教授要旨에는 「本課에 있어서는 明治天皇의 朝鮮에 對해 베푼 恩惠 및 明治天皇, 今上天皇陛下의 一視同仁의 聖意를 傳하여 總督政治의 方針 및 그 實績을 詳하고 舊時代에 比해, 朝鮮人民이 如何히 幸福한가를 說明할것」이다 하였고 또 그 教授要領에 있어서는 「日韓併合條約의 成立와 더불어 韓國은 大日本帝國의 領土가 되고 그 人民은 모다 天皇陛下의 臣民이 되었다. ……勳功이 있는 者에게는 爵及恩賜金을 下賜하고 一般朝鮮의 人民에 對해서는 ……各種의 仁惠를 베풀었기에 上下一致하여 感泣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說明하여 一視同仁의 天皇에게 感謝하고 天皇의 「臣民」으로서의 一貫된 教育方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뒤에 1932—33年에 訂正發行된 「普通學校國史」에서 「韓國併合」(卷二 第七)의 內容을 보면⁽¹⁸⁾

「我國은 明治初부터 오로지 朝鮮의 幸福을 圖謀하여 먼저 修好修約을 締結해서 이를 列國間에 提示하였다. 그러나 韓國은 獨立의 實을 거둘 能力이 없어 언제나 他國에 壓迫되어 움직이어 夏洋의 平和를 파괴할 憂慮가 있었기 때문에 我國은 포츠머츠 條約에 의하여 새롭히 韓國과 盟約를 맺어 이를 우리 保護國으로 하고 그 外交을 取扱한 것이다. 그리고 京城에 統監府를 設置하여 伊藤博文을 統監에 任命하고 韓國의 內政을 改革하는데 盡力케 한 것이다. 그로부터 數年이 지나 韓國의 政治는 漸進的으로 改革되었으나 多年의 弊政은 쉽게 去되지 않느라 民心은 아직 不安을 免치 못하였다. 거기다 歐美諸國의 勢力이 한참 東洋에 들어오는 때는 맞아 함께 國利民福을 完成하기 위해서는 日韓兩國이 合쳐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이리하여 韓國人중에서도 热心히 併合을 바라고 兩國政府에 出願하는 者가 漸次 많아졌습니다. 韓國皇帝도 또 이 事實을 감안하셔서 民意를 받아들여 明治 43年 8月(紀元2570年) 統治權을 天皇에게 讓步하시고 帝國에新政에 의하여 加一層 人民의 幸福을 增進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天皇도 또한 併合의 必要를 認定하셔서 韓國皇帝의 申請을 受諾하시고 永久히 韓國을 併合하셨습니다. … 實로 明治天皇은 父가 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깊은 愛情을 가지고 朝鮮의 人民의 幸福을 軫念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半島의 人民은 모다 帝國의 臣民으로서 皇室의 威德을 推抑하게 되고, 東洋平和의 基礎는 더욱 더욱 堅固해졌습니다. …」

이와 같이 日本帝國主義는 朝鮮人子弟에 대해서 그들의 侵略的 植民地支配를 음폐하기 위하여 歷史的 事實을 偽造하고 오로지 欺瞞에 充滿한 內容의 歷史教育을 注入시킴으로써 韓國人을 어려서 부터 日帝의 臣民化하기 위한 政治的社會化를 強要한 것이었다.

(18) 普通學校國史 卷二, pp. 109-113.

四. 「產米增殖計劃」과農民의 貧窮化

1920年代 日本帝國主義의 韓國에 대한 植民地產業政策은 所謂「產米增殖計劃」을 「本期施設中의 一大眼目」으로서 遂行하는데 重點을 두고⁽¹⁹⁾ 韓國農業의 植民地的米穀單種耕作型產業構造에로의 再編成을 一層 強化한 것이다.

이 計劃는 元來 1918年(大正 7年)에 일어난 日本의 米騷動後의 米穀對策에서 비롯된 施策으로서 韓國へ을 위하여樹立된 것이 아니었다. 當時 日帝는 1920年代에 있어서의 慢性的恐慌에 對處하기 同時 根本의으로는 植民地 韓國을 그 商品販賣市場으로서 또한 工業原料와 食料供給地로서 典型的인 植民地的 經濟構造에로 轉換 改編하기 위하여樹立强行한 것이다.

日帝는 1920年「朝鮮增殖計劃」에着手하는 同時に 1921年 9月 植民地的 經濟收奪을 보다 强化하기 위하여 總督府 政務總監 水野鉢太郎을 委員長으로하는 「產業調查委員會」를 設置하여 「朝鮮產業에 關한 一般方針」을 發表하였다. 이 方針은 朝鮮에 있어서의 產業上의 計劃을 帝國產業政策의 方針에 順應시킬 것」을 期한 것이다 그 方針에 依하여立案된 「朝鮮產業에 關한 計劃要項」은 農業, 林業, 水產業, 工業, 鎳業, 燃料 및 動力, 產業資金, 海運施設, 鐵道施設, 道路, 港灣, 河川 等 十部門에 걸치고 있으나 그 中 農業에 關한 計劃要項에 重點이 주어지고 있으며 特히 「產米의 改良增殖」이 最優先의으로 取扱되고 있다.⁽²⁰⁾

朝鮮總督府의 「朝鮮產米增殖計劃」의 目的是 日本에 있어서의 食糧問題의 解決策으로서 講究된 것이 事實上 1918年 以來로 日本國內의 「食糧問題의 解決은 當時 日本國民의 死活問題로서의 重要案件」 또는 「國策上 噫緊의 要務」或은 「朝鮮統治上에 貢獻하는」 政策的 課題로서 取扱이었던 것이다, ⁽²¹⁾ 이러한 韓國米略奪을 위한 植民地政策을 「內鮮共同의 福利」, 「朝鮮의 農民을 匡救하는 捷徑」, 「朝鮮의 產業開發에 寄與」, 「朝鮮全體의 經濟力의 伸張」, 「半島의 富力を 增進하는 最捷徑」等等의 敷謊的 言辭로서 陰蔽하고자 한 것이다.

무릇 日帝에 依한 「產米增殖計劃」의 本質的 目的是

첫째로 諱國米를 大量收奪함으로써 日本의 食糧危機 및 기타의 社會的 諸矛盾을 打開하고

둘째로 韓國農村에 莫大한 日本國家資本을 投入하여 國家는 물론 日本獨占資本과 地主 등의 莫大한 利潤을 確保하고

셋째로 이 計劃을 契機로 하여 日本農民을 大量으로 韓國에 移住시켜 植民地 韓國支配體

(19)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p. 165.

(20) 小川九郎編著,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pp. 371-373.

(21) 朝鮮總督府 施政二十年史, pp. 390-391.

制를 보다 堅固히 하려는 것이다.

第一次世界大戰以後 日本資本主義의 急速な 發展에 依하여 都市人口가 急増하고 米穀의 要需를 一層 促求하자, 日本內의 米價騰貴는 韓國米에 對한 需要를 喚氣하게 되었다. 特히 在韓日本人、地主에 큰 영향을 미쳐 土地購入, 土地經營擴張, 土地農事改良 等에 注力하게 되어 韓國米의 商品化에 박차를 加했다.

當時 有力한 日本人 地主企業家의 一人이며 「不二興業株式會社」, 「土地改良株式會社」의 社長이었던 犬井寛太郎은 그의 著書 「朝鮮의 產米增殖計劃과 水利事業」의 目的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率直히 吐露한 바 있다. 「年年 六, 七十萬의 人口가 激增하는 帝國의 人口問題 및 그 食糧問題는 實로 國家의 最大 重要問題이다. … 大正七年(1918年) 米騷動을 감안해서라도 食糧의 缺乏으로부터 오는 人心의 惡化는 上下를 不問하고 常識을 벗어난 實로 무서운 驚亂을 惹起하게 이르렀다. … 朝鮮, 滿州로 하여금 真實로 我國民의 食糧供給地로 만드는 大策을 樹立·나지 않으면 안된다. … 다시 이를 人口問題 및 朝鮮統治上의 見地에서 보면 朝鮮의 未墾地를 開拓하여 內地의 過剩人口를 移住시킴은 最急務이며 … 朝鮮의 產業을 開發하고 그 風習을 改善하고 人心을 安定시키며 真實로 日本人으로 만들기 爲해서는 적어도 2,3百萬名의 內地人을 朝鮮에 移住시키지 않으면 안된다」⁽²²⁾는 그의 率直한 吐露를 통하여 우리는 日帝의 「產米增殖計劃」의 前記한 本質的目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計劃의 基本內容은 從來의 品種의 改良이나 耕種法改良 等의 技術的인 것과는 달리 보다 大規模의 灌溉施設과 耕地의 整理를 中心으로 日本國家資本의 大規模의 韓國農業經營에 的 投資를 과한 政策이었으며 同時に 水利組合, 金融組合 等을 通한 高利貸의 性格을 띤 것이었다.

그리고 產米增殖計劃의 中心을 이룬 「土地改良」事業의 内容은 ① 水利灌溉設備을 改善하는 水利事業, ② 밭을 논으로 變更하는 地目變更, ③ 國有未墾地의 開拓 또는 水邊 干拓地를 開拓하는 3 等 三種이었다. 이 土地改良事業은 個人에 依한 경우도 있었지만 大部分 水利組合을 組織해서 遂行한 것이며 이 水利組合은 「東洋拓殖株式會社」와 더불어 韓國農民이나 韓國人 中小地主에 對하여 원활의 對象이 되었다.

水利組合는 그 設立에 있어서 日本人地主가 中心이 되어 設立請願書를 郡守나 面長等과 結托하여 不正手段으로 認可를 받았으며 흔히 日本人 大地主의 一方的 決定에 依하여 設立運營되고 組合內의 大部分을 占하는 韓國人 中心地主 및 中貧農은 大量의 不利益을 強要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貯水地 等을 만드는 水利事業도 一部의 地主利益은 保證했으나 大量의 中小地主 韓國農民에게 損害를 強要했다.

水利組合의 設立에 對해서 日本政府의 貸與金과 總督府의 補助金이 交付되었으나 이를 通해서 莫大한 特惠와 利益을 얻은 것은 結局 東拓과 朝鮮殖產銀行이었으며 韓國農民은 收益

보다도 많는水利組合費의 負擔으로 그 土地改良을 위한 借入金과 利子를 充當하여야 했다. 이와같이 水利組合事業의 本質的 性格은 韓國人 中小土地所有者와 農民의 犠牲下에 日本政府에 依한 土地兼併을 促進하고 그 結果 土地欲는 韓國農民의 飛躍的增殖을 가져오고 半封建的 地主・八作人關係를 基礎로 하는 大地主農場經營을 育成한 點이라 하겠다.

前述한 「產米增殖計劃」의 遂行에 依해서 韓國에 있어서의 米穀生產量은 表와 같이 增大하였다. 즉 1921年の 生產高가 1,400餘萬石인데 對하여 1928年에는 1,700餘萬石으로 增大하고 있다(20%增). 그러나 이 反面에 日本에로의 米穀移出이 1921年에 300餘萬石으로부터 1928年에는 700餘萬石으로 2.3倍 以上이나 增大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에서 米穀生產과 移出量의 不均衡狀態가 激化되어 그것은 마침내 韓國人의 食生活에 直接 영향을 미쳤다. 韓國人 1人當 年間平均米穀消費量은 1921年 約 6斗7升5合으로부터 1930年에는 4斗5升으로 減少되었(日本人 1人當 年間 消費量은 1石1斗가 確保되었음).

米穀生產, 移出, 消費量

	生産高	日本移出	韓國人 1人當消費量	日本人 1人當消費量
1912	11,568千石	2,910千石	0.7724斗	1.068斗
1915	14,130	2,058	0.7376	1.111
1917	13,933	1,296	0.7200	1.126
1919	15,264	2,874	0.7249	1.124
1920	12,708	1,750	0.6301	1.118
1921	14,882	3,080	0.6749	1.153
1922	14,324	3,316	0.6340	1,100
1923	15,014	3,624	0.6473	1.153
1924	15,174	4,722	0.6032	1.122
1925	13,219	4,619	0.5186	1.128
1926	14,773	5,429	0.5325	1.131
1927	15,300	6,136	0.5245	1.095
1928	17,298	7,405	0.5402	1.129
1929	13,511	5,609	0.4462	1.110
1930	13,511	5,426	0.4508	1.077

資料：「朝鮮米穀要覽」

韓國에서는 年間 300~700石의 米穀을 日本에 移出하는 反面에 그 不足을 補充하기 위해 安價의 外米 및 滿洲의 粟을 多量으로 輸入하여 消費에 充當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即 韓國農民은 그들이 自作한 米穀을 팔고 安價한 外米나 滿洲粟을 購買해서 糜口之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이에따라 總督府는 畜, 其他 雜穀耕作을 嘉勵하였다. 이와 같이 產米增產計劃에 따르는 韓國米의 收奪은 結局 韓國民의 米不足를 招來하고 심각한 食糧問題를 惹起케 하였다.

한편 日帝는 「林野調查事業」이라는 名目下에서 山林을 略奪하였고 그들의 工業原料로서 의 棉花繭을 略奪하기 위하여 棉花栽培와 產繭增收 및 養蠶業을 強要하였다.

즉, 日帝는 「林野調査」의 목적을 「土地調查令」에 의하여 調査를 하지 않은 林野 및 林野 내에 介在하는 林野 以外의 土地(30萬3千筆 約13萬4千町步)의 調査 및 測量을 해서 其所有者와 土地의 境界를 查定하고 所有權을 確定한다」⁽²²⁾고 하고 그 實施過程에서 「森林法」「森林令」에 의한 「國有林野」에의 強制的 編入形式으로 略奪하여 우선一部는 日本人資本家에게 貸付 讓與 및 賣却하였고 뒤이어 1918년의 「林野調査令」(刺令第5號)에 의하여 「土地所有權을 確定한다」는 名目下에 大量의 林野를 略奪하여日本人山林資本家의 育成을企圖한 것이다.

특히 「林野調査」過程에서 「申告主義」를 強權의 으로 還用해서 所有權을 決定하였으나 그查定節次에 있어 民有林, 國有林 區分의 基準과 認定方法 이 不合理 애매한 關係로 많은 民有林이 國有林으로 編入되어 結局沒收當한 것이며 또 當時의 民度나 또는 韓國在來의 慣習上 이같은 「申告主義」는 適當한 方法이 못되었고 植民地의 山林政策을 露呈한 것에 不過하였다.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은 日本帝國主義의 「產米增殖計劃」과 山林政策 및 產棉花·繭增收政策의 強行은 日本人地主의 增大를 가져온 反面에 韓國農民의 貧窮化를 招來하였다.

즉 1910年代期間에 있어서 土地集中화와 더불어 地主와 그 小作地는 累年 增加하였으며 특히 日本人地主는 1920代에 急增하고 있는 反面에 韓國人地主와 그 所有面積은 漸次 減少되고 있고 또 土地集中과 同時に 土地의 細分化가 進行되면서 多數의 中小地主에 대하여 少數의 大地主가 累年 增加하는 가운데 같은 大地主中에서도 日本人大地主가 朝鮮人大地主보다 時刻의 優位性을 띠고 增加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²³⁾

이와같이 日人系의 地主가 年年 增加하는 反面 自作農 自小作農은 年年 減少되고 또 小作農 및 火田民은 年年增加하고 있으며 小作農은 다시 雇傭者, 勞動者, 失業者 및 海外流亡으로 轉化沒落해 갔다. 그리고 1920年代의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農業政策과 慢性的恐慌은 數많은 韓國農民을 離農, 離鄉으로 몰아넣고 失業者 生活難의 穷民의 海外에의 出稼 移位荒亡을 增大시켰으며 이로써 南韓의 住民은 主로 日本에 그리고 北韓의 住民은 主로 中國閩島地方 等へ 移住하였다.

1926年부터 1931年까지 5年期間에 乞食者가 1萬에서 16萬3千名 春窮期(3—5月頃)에 草根木皮로 生命하는 穷民이 29萬6千名에서 104萬8千名 또 겨우 穷民을 免한 極貧細民이 186萬

(22) 朝鮮の林業, 1925. p. 11.

(23) 日本人地主의 增加는 1922年現在 30町步以上 所有 日本人地主 143戶가 1925年에는 478戶(所有面積은 8萬6,780町步에서 11萬7,654町步) 1929年에는 戶數가 470戶 所有面積 13萬3,721町步, 1930年에는 870戶, 21萬6700町步로 增大하고 있음(여기서 東拓所有地 11萬3千町步를 加算하면 33萬町步가 됨).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와 舊植民地地主制, p. 79)

另個의 資料에 의하면 東拓과 日人所有地 不二興業會社의 非課稅地 및 國有地를 包含해서 1924年才의 日本人所有의 農耕地의 總面積은 60萬餘町步로서 이는 全韓國農耕地 452萬町步의 13.3%이 該當임.(朝鮮總督府, 「朝鮮의 言論과 世相」, p. 312)

에서 420萬名²⁴⁾로 각각 增加하고 있고 1930年의 穷民狀況을 보면 小作農은 68.1%, 自小作農은 37.5%, 自作農은 18.4%가 穷民이고 그 數는 耕地가 많은 南韓이 되어 北韓보다 많았다.⁽²⁴⁾

五. 植民地的 產業政策

日帝는 第一次世界大戰以後의 침정적 戰時景氣에 뒤이어 몰아 닥친 經濟恐慌의 危機를 過剩資本의 投下와 軍備擴張을 目的으로 한 工業施設을 漸次擴充하였다.

日帝는 1920年4月에 「會社令」을 廢止하고 韓國에 있어서도 日本과 같이一般的인 屆出制반으로 會社의 設立을 自由로 하可能하게 한 것이나 그 欺瞞的 理由야 如何間에 實質한 意圖는 日本資本의 投資를 擴大하려는데 있었으며 또 1920年8月에는 「併合」以後 存續해온 關稅를 撤廢함으로서 日本資本의 韓國輸出을 促進하였다.

統計에 의하면 韓國人資本은 1920年代 後半에 減退하여 10%에도 未達이고 그대신 日本人資本은 60~70%를 占하며 거기에 韓日共營會社는 實質上 大部分이 日本資本임으로 日本資本은 實로 80~90%를 占하게 되는 것이다.⁽²⁵⁾

또한 1910년부터 1932년까지의 日本資本輸出 및 利潤統計를 보면 1910年부터 1932年間에 貿易外原因에 의한 日本資本 流入額은 約 18億8830萬圓에 達하고 그利益金으로서 流出額은 3億6300萬圓¹⁾로 그利潤率이 19%強 이고 그중 會社資本만을 본경우 34%의 超過利潤이 流出되고 있다.⁽²⁶⁾

그리고 1920年代의 韓國의 工業發展의 植民地的性格은 工業內部의 各部門間의 不均衡性에서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이 時期의 工業生產의 大部分은 輕工業이었고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均不均衡 아니라 重工業의 内部와 輕工業의 内部에 있어서도 不均衡이 極甚했다. 특히一般的으로 本製品生產工業과 精米業을 위시한 食料品加工業이 壓倒的 部門을 占하고 있는 바 이는 곧 日帝資本主義를 위한 食糧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從屬的 植民地產業政策을 明白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1929年度 充計에 의하면 食料品加工業이 63.5%를 占하고 重工業은 金屬·化學·機械工業을 合해서 12.1%이며 그중 機械業은 最低率로서 1.3%에 不過하였다. 이로서 이 時期의 植民地工業의 發進性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時期의 工業規模도 零細的인 것어서 50人 以下의 從業員을 가진 小規模工場이 壓倒的이었다.⁽²⁷⁾

(24) 文定昌, 軍國日本朝鮮強占 36年史中, p.435. 久間健一, 朝鮮農政의 課題, pp.45-46.

(25)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pp.259-262.

(26) 細川芳方, 「植民史」, pp.274ff.

(27) 朝鮮經濟年報 1939年版, 全錫淡, 崔潤奎, 19世紀後半期 日帝統治末期 朝鮮社會經濟史, p.210. 朝鮮ノ工業規模別統計, 1930年, 1932年.

그리고 이時期의 民族別資本의 構成을 보면 日本資本이 絶對的으로 優勢한 것은 再言할 餘地가 없었다. 1920年以後 韓民族資本도 若干의 量的成長은 있었지만 日本資本의 增大와는 比較가 되지 않게 微弱한 것이었다. 統計에 의하면 韓民族資本은 韓國內 會社資本總額의 10.3 %에 不過하였고 그것도 一部의 工業 및 鎳山業과 銀行등에 投資되기도 했지만 大部分이 仲介的商業 高利貸資本 및 土地投資等 非生產的分野에 投資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28年 度 日本人 資本 4億9900萬圓(90.8%)에 대하여 韓國人 資本金은 겨우 2500萬圓(4.6%)에 不過한 素細性을 드러내고 있었으며⁽²⁸⁾ 이로서 日帝獨占資本의 韓國民族資本에 대한 隸屬化 및 抑壓政策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資本은 鎳業에 있어 獨占的地位를 굳혀갔으며 日本人資本이 大部分을 占하고 日本人鎳山 80%에 대하여 韓民族의 投資資本은 10%에 未達했고 韓國人 鎳產額은 10%內外(1930年에는 6.2%)에 불과하였다.⁽²⁹⁾

또한 1920年代 韓國에 대한 日本商品의 輸出은 關稅의 撤廢(1920年8月)와 함께 急增하여 韓國의 市場을 獨占하고 그地位는 絶對的優位를 차지 해서 日本全輸入額의 70~80%를 占하고 있다. 특히 農產物 및 原料供給地로서의 韓國의 位置는 一層 높아져 日本에의 輸出은 全體의 90%를 超過한 것이다.

그리고 日帝의 金融支配現象을 보건데 韓國의 金融機關에는 그 中央金融機關으로서의 朝鮮銀行, 不動產 및 各種 產業金融機關으로서 朝鮮殖產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貯蓄銀行業務를 經營하는 朝鮮貯蓄銀行이 있고 또 數個의 產業金融銀行이 있었다. 그밖에 地方人民의 小金融機關으로서 各地에 金融組合, 無盡會社가 있었다.

朝鮮銀行은 韓國支配의 中央銀行으로서 銀行券을 發行하여 朝鮮總督府金庫事務를 取扱하는 동시에 總督府의 保護監督下에 資本貸付 事業公債을 引受하고 또 商業銀行으로서 貿易과 產業의 金融業務와 특히 滿州地方을 비롯하여 海外에도 支店 出張所를 設置해서 金融活動을 展開하였다.

朝鮮殖產銀行은 1918年 「植民地開發」을 目的으로 設定된 移殊銀行으로서 主로 公共貸付業務를 取扱하였다. 產業, 公共貸付의 重要對象은 金融組合聯合會, 水利事業, 土地改良 및 農業등이 있으나 1921年에는 金融組合에 대한 貸付가 第一되었고 그後는 「產米增殖計劃」과 關聯해 土地改良, 水利事業, 農事改良低利資金이 增加되어 특히 1927年以後에는 土地購入, 種苗, 肥料, 農具, 建築등을 위한 農業貸付가 首位를 占하였고 그것은 日本人地主와 農事會社 및 그들을 中心으로 한 農會나 各種 組合을 主要對象으로 한 것이었다.

東洋拓殖株式會社는 本來 地主經營등의 拓殖事業 以外로 金融業을 經營하고 朝鮮銀行 및

(28) 朝鮮經濟年報 1939年版, 朝鮮の商工業(1930), 朝鮮工業統計參照.

(29) 姫野實編, 朝鮮經濟圖表, p. 325

朝鮮殖產銀行과 더불어 韓國에 있어서 三大金融機關의 하나이었다. 東拓은 政府의 特別한 保護下에 特權⁽³⁰⁾ 賦與되어 廣大한 土地를 所有하는 大地主會社로서 莫大한 資金을 가지고 土地改良, 水利事業, 農事經營 및 「產米增殖」事業에 貸付를 할 뿐더러 株券 債券引受등의 金融業도 營爲하였다. 貸付金은 韓國人地主를 對象으로 한 不動產擔保貸付가 大部分이었으며 그 金利도 韓國人地主自作農으로 부터 收奪한 것이었다.

다음 金融組合은 組合員에 대하여 農業資金貸付를 主로 取扱한 庶民金融機關으로서 1930年現在 村落金融組合 565個 都市金融組合 62個 金融組合聯合會 13個이고 組合員은 村落・都市 合計 62萬6400餘名에 達하였다며 1929年부터는 非組合에 대해서도 擴大하여 漸次 一般 金融機關의 役割을 차였다. 金融組合의 貸付對象의 組合員은 大半이 中小地主 自作農 自小作農 上層農民으로서 米價低落과 經濟恐慌은 韓國人 中小地主 中農등의 借金返濟를 不能解 해서 結局 그들의 擔保土地의 没收로 因한 大地主 특히 日本人大地主에서 土地集中을 促進했으며 나아가서는 下層貧農에 대한 苛酷한 收奪과 離農 또는 海外流浪을 催促한 것이다.

다음 總督府財政體系의 收奪의 性格을 簡單히 살펴 보건데 1920年代의 所謂「文化政治」時期의 總督府財政、警察機關의 擴充, 官吏의 增員, 教育機關의 增設 및 「產米增殖計劃」등 民族彈壓과 懷柔政策을 强化할 目的下에서大幅의으로 膨脹하였다. 即 1919年度 歲入豫算 7千756餘萬圓이 1920年度에 1億2千479餘萬圓, 1921年度 1億6千247餘萬圓으로 約二倍增加를 했으며 1930年度에는 2億3千800餘萬圓으로大幅增加하였다.⁽³⁰⁾ 이豫算增大를 確保하기 위해서 1921年에는 煙草專賣令을 實施하고 1926年에는 稅制調查委員會를 設置하고 稅制의 根本的改革을 斷行함으로 租稅收奪體系를 整備強化하였다. 即 1927年에는 營業稅와 資本利子稅를 新設하고 地稅, 鑄稅, 收益稅를 整備하고 酒稅, 砂糖稅같은 消費稅를 引上改正하는 등 收奪財政體系를 整備하였다.

그리고 當時 韓國財政에서 重要한 位置를 占하는 專賣局 鐵道 運信等 國家資本의 官業收入은 飛躍的으로 增大하였으며 1921年度에 歲入의 25%가, 1926年度에는 49% 그리고 1930年度에는 歲入의 52%以上을 차지하였다.⁽³¹⁾ 煙草, 人蔘, 鹽등 專賣收入, 鐵道收入은 究極의 으로 韓國人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것이었고 이밖에도 歲入의 約 20%를 占하는 租稅의 대부분이 韓國農民이 主로 負擔한 地稅 酒稅 砂糖消費稅등의 大衆消費稅이었다는 點을 감안할 때 實質的으로 總督府歲入의 約 80%는 韓國民이 負擔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總督府歲出面을 보건데 1910~1919年期間의 歲出費의 順位가 治道 海關 土木費, 官業費, 地方行政費, 警務諸費이던 것이 1920年代부터는 官業費, 警務諸費 營繕費, 地方行政費, 國債의 順位로 变했다. 官業費의 增加는 專賣制度實施 鐵道運營에 起因한 것으로 1921年에 歲出의 43%, 1926年에 48% 그리고 1930年에 50%로 增大하고 있어 總督府의 企業的性格

(30) 朝鮮總督府, 施政 25年史, pp. 360-361

(3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을 如實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많은 警務費가 支出되고 있으나 1920年度에는 前年の 約 4倍가 增大하였으며 여기에 裁判 및 監獄費를 包含하면 1921年度에 歲出의 18%에 達하고 있어 治安維持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教育費의 增加 產米增殖 또는 治水事業이란 名分下에서 實質上 日本人에게 惠澤을 입힌 것이 많았다.⁽³²⁾

한편 1920年代 韓國은 主로 日本의 增加하는 人口의 食糧의 供給源이며 또한 日本商品의 市場으로 간주되었으나 工業化와 中產階級의 成長은 強化되지 못했고 鎌山業은 1913年以來로 急速히 增大했다.⁽³³⁾ 그리고 交通, 運輸分野에도 急速한 發展이 있었는데 1899년의 서울一仁川間의 鐵道開設을 비롯해서 日本은 主로 鐵道建設에 特別한 關心을 기울였고 極東에 있어 鐵道網은 日本에 뒤이어 둘째번이었다. 이는 本來 韓國의 國內需要를 위한 것이 아니고 日常의 大陸侵略과 植民地經營을 위한 것이었다. 工業化와 交通運輸의 發達 및 郵便通信網의 擴充은 急速한 都市化를 促求하고 또한 勤勞人口의 增加와 그 組織化를 促進했다.

즉 1910年에는 人口 1萬4千名以上的 都市는 11個에 不過하고 이들 都市人口의 總計는 겨우 5.3萬6千名으로 全人口의 4%에 不過했으나 1939~40年에 國勢調查가 實施되었을 때에는 前記 14個의 都市의 人口는 191萬6千名에 達하고 增大한 全人口의 約 8.4%를 차지하게 이르렀다. 이와 같은 都市人口의 增加는 工業化에 따르는 農村의 勤勞人口의 都市移動에 起因할 뿐더러 農村에 있어서의 地主의 橫暴와 農村의 貧窮 및 餓餓狀況이 都市流入을 促進한點을 看過할 수 없었다.⁽³⁴⁾ 그리고 勤勞者는 1930年에는 工場勞動者만 10萬名을 超過하고 여기에 鎌山勞動者 約 3萬6千名 運輸, 土建勞動者 約 8萬2千名을 合計하면 約 22萬名에 達했으며 其他 自由勞動者 등을 合하면 約 100萬名 以上에 達했다. 韓國人勞動者總數는 1922年 現在 51萬8,603名(勞動者總數 95萬4,832名)이던 것이 1928年 現在 113萬6,000名으로 增加하고 있고 이들중 10萬 前後의 工場 鎌山勞動者를 除外하면 人夫, 荷物運搬夫, 車夫, 土工등의 土建, 運輸勞動者가 50萬, 幼年勞動者 女子勞動者가 約 32萬에 達하고 있으며 1929年的 工場勞動者中 女子勞動者, 幼少年勞動者가 各己 35.2%, 7.5%를 占하고 있고 이들은 家計를 補充하여야 할 處地이었다. 且 韓國에 있어 勞動賃金은 日本에 比較해서 겨우 6割6分에 不過하나 韓國人勞動者는 民族的 差別을 받아 同一한 日人勞動者의 約半의 賃金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었고 工場勞動時間은 12時間以上이 46.9%, 10~12시간이 11.9%로서 長時間勞動에 다 1休日은 거의 없었다. 日帝植民地勞動者の 特性으로서 餓餓의 低賃金에 의한 韓國人勞動者의 極惡勞動條件과 日人資本家에 의한 그 收奪相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³⁵⁾

(32) 前揭朝鮮總督府統計年報.

(33) 1929年度의 韓國에 있어 工業會社(鎌山業包含)의 成長은 會社數 484社, 工業의 比率 24.7% 平均資本 15萬8千圓이었고 또 韓國에 있어 產業活動狀況을 보면 1922年에 雇傭者數 4萬6千名, 工業總生產高 2億2千3百萬圓이 1929年度에 雇傭者數 9萬44千名, 工業總生產高 3億5千1百萬圓으로 增大되었다. G.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art II, pp.94-98 chapter 2.

(34) G. Henderson, *op. cit.*, part 2 pp.99-101 Urbanization.

(35) 數字朝鮮研究 第2輯, 朝鮮經濟年報 1939年版,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年

六. 結 語

以上에서 우리는 齋藤總督의 所謂 文化政治의 欺瞞性을 如實히 파악할 수 있겠다. 齋藤總督의 施政을 細密히 分析해 보면 寺內, 長谷川兩總督의 그것과 本質上 큰 差異가 없었다. 즉 齋藤의 政治도 그 本質은 武斷政治이었음을 그가 中央政府에 提出한 朝鮮內에 二個師團을 增設하라는 意見書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³⁶⁾ 그것은 事實上 武斷的 植民地支配의 紓和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一層 狡猾한 欺瞞的 植民地支配政策으로서 深化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三·一運動以後의 高調되는 韓民族의 反日抗拒意識을 癪癥시키고 將次 더욱 苛酷한 收奪과 彙壓을 慮行하기 위한 擬裝된 對策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文化政治」에 대해서 當時 實情을 모르는 一部 外國人에게는 폭발적인 感激을 불러일으켰다. 「아일란드」 Alleyne Ireland는 「지난해 (1925年 혹은 1926年)에 韓國으로 부터 들어온」 우스는 이방향(한국인과 일본인과의 融和)으로의 大勢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희망을 正當화 한다. 그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의 것인 간에 그 功績은 주로 齋藤總督의 韓國人에 대한 人情깊고 慰撫的인 態度에 돌릴 것이다, 또 6年以上에 걸친 그의 비상한 精力의 無制限한 使用과 더우기 그의 비상한 行政手腕의 열매인 현명한 手段에 돌릴 것이다」⁽³⁷⁾라고 극찬한 바 있으며 또 獨逸人 「골드슈미트」 (Richard Goldschmidt)는 「齋藤는 正義와 그의 任務에 대한 높은 道德的인信念을 통하여 平和의이고 유순한 사람들의 信賴를 얻는 方法 그리고 참된 和睦을 위한 길을 트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또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때 日本의 分配는 의심할 것 없이 韓國人에게 祝福된 일이었다. 물론 그들은 부패하고 낡은 國家에서보다 강력하고 질서있는 지배하에서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³⁸⁾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一部 日本帝國主義의 御用學者들은 戰前은勿論하고 解放된 現在에 있어서 까지도 齋藤總督이 마치 「善政」을 施行한 것 같은 讚美論을 펴는 者가 있는가 하면 日本帝國主義로統治하지 않으면 朝鮮統治의 結末을 볼 수 없다고 放言하는 甚한 時代錯誤에 빠진 者 조차 있으며⁽³⁹⁾

(36) 「朝鮮에 陸軍兵力增加를 要하는件」의 理由속에서 그는 3.1運動이 지와 같이 擴大된 것은 朝鮮駐留의 軍隊가 2個師團 밖에 없었고 거기다 그것도 龍山과 羅南에 集中시켜 놓았기 때문임으로 이 軍隊의 配置를 조금 더 朝鮮全土에 分散配置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의 二個師團으로는 兵員數가 不足함으로 朝鮮駐留를 위해서 2個師團을 더 增員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 師團도 日本内地로 부터 移駐시킨다면 國際問題도 惹起되지 않을것이라는 意見이었다.

(37) *The New Korea*, New York, 1926. p.61

(38) Richard Goldschmidt. *New Japan*. Berlin, 1927, pp.288-289.

(39) 千葉了, 「朝鮮獨立運動秘話」, p.25.

青柳南冥, 朝鮮統治論, pp.83-84.

同上, 總督政治史論, 後編, p.87

이들[야말로新版植民主義를鼓舞하는反動的朝鮮觀이라고하겠다.

事實上所謂文化政治라는美名下에서憲兵制를廢止하고巡查制로代置했다고해서韓國人에게何等의實益이있는것이아니었다.

齊泰總督이施行한憲兵政治의廢止란從來憲兵이戶籍事務나衛生警察까지해온것을警察官에게此種의事務를移讓한것에不過하고그것때문에彈壓機關으로서의憲兵의數는相對적으로增員된셈이된다.그리고憲兵에의한行政警察의事務가줄어든대신警部補,憲兵上等兵,以下巡查部長,巡查에이르는下級警官과警察의派出所와駐在所가함께增設되고있다.憲兵上等兵이650名增員되고警察派出所또는憲兵遣出所는53個가增設되고警察官住在所또는憲兵駐在所는無慮1014個나增設되었는바이와같이直接民衆과接하는憲兵의數와官署가增加되고있는것이다.

또한警察署의巡查刑事는增員되어各處에駐在所가設置되고또特高刑事가數萬名으로拡加되어韓國人에대한自由와權利의剝奪뿐만아니라愛國鬪士와思想犯에대한巡查逮捕酷刑에狂奔하였고韓國人官吏등도언제나이들巡查,刑事의監視를받았다.

韓國에있어서巡查一人當責任分擔은1919年以前은面1.08方里,戶數242戶,人口1,295名이었으나1919年制度改正以後1923年末에는面積0.71方里,戶數169戶,人口919名으로서이는韓民族에대한監視가보다嚴格해진것을示唆하는것이다.또警官以外로憲兵,軍隊도配置하고있어一府郡一警署一面一駐在所主義警官權의道知事에의移管,軍隊의增派配置計劃등에의하여日常的으로非常事態에對處하는體制가整備되고있었다.

특히首都「京城」의警察體制는武斷軍憲以上의威力를發揮할수있도록強化整備되었으며韓國의治安體制는全國적으로完璧을이루게된것이다.이것이所謂文化政治의實態요:本質인것이다.